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의 공포와 관련하여

본 기사는 2002. 3. 27 오전 11:00시 협회중앙회 회장실에서
전력기술관리법이 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개정 공포되기까지 전과정에 대하여
전력신문 이민규기자가 협회 안인순회장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 교육훈련팀

O기자 : 회장님 ! 3월 25일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건축사사무소가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한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감리로 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공사감리에 관한 특례』규정이 국회에서 삭제되기까지 회원 및 전력기술인들이 모르는 많은 어려움이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체 전력기술인들의 최대관심사인 『공사감리에 관한 특례』규정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데 대해서 회장님의 감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회장 : 정말로 속이 시원합니다. 그 동안 짓눌러 오던 답답했던 가슴이 확 뚤린 그런 기분입니다.

먼저 이 기회를 통해서 일정규모(전압 600V, 용량 75KW)이상의 중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의 일원화를 관철시켜 주신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민간 일반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감리는 건축법과 전력기술관리법중에서 발주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중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는 기업의 규제완화보다 전기의 안전성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리에 관한 특례』규정(신설)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중요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에 있어서 독립성을 확보한 것으로 전력기술인 모두가 함께 경하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 전력기술관리법의 제정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 우리 나라는 매년 전기재해로 인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재해 발생률은 후진국인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기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삶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고 있지만 전력시설물의 시공이나 관리를 잘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전력시설물은 설계 · 시공 · 감리 및 안전관리가 엄격하게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94년 성수대교 및 95년 삼풍백화점 등 대형붕괴사고의 원인이 무리한 설계변경과 감리부실로 규명됨에 따라 건축, 전기 등 전문분야별로 감리의 중요성과 엄격한 감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199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자 : 『공사감리에 관한 특례』조항이 개정안으로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회장 : 199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전력기술관리법안이 심사될 때부터 건설교통부에서는 반대를 하였고,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민간 일반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감리는 건축법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해왔으나 이에 대하여도 산업자원부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성확보를 이유로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건설교통부에서 "전기공사 감리에 대한 중복규제 정비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함에 따라 이 문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으며 2000년 6월 9일 제54차 본회의에서 민간 일반건축물의 전기감리는 건축법과 전력기술관리법중에서 발주자가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권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년 8월 4일 건설교통부는 건축법중개정법률안 제21조제10항에 "건축법에 의하여 공사감리를 받은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공사감리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협회는 회원 및 전력기술인 20,382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 산업자원위원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에 건축법개정법률안의 공사감리 특례규정을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동년 9월 9일 산업자원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제54차 본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심사해 줄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년 9월 29일 규제개혁위원회 제61차 본회의에서는 『공사감리에 관한 특례』규정을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하고, 동 『공사감리에 관한 특례』규정은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산업자원부는 2001년 7월 2일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를 한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제2항에서 감리원 배치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하는 『공사감리에 관한 특례』규정을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 전기감리업체, 전기학계 및 전력기술인 등이 전력시설물의 안전성확보 및 관련업체간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공사감리에 관한 특례』규정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년 10월 26일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가

있었는데 이 때에 건설교통부는 산업자원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제12조의2 제1항에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한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원 배치기준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제2항의 삭제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는 감리원 배치기준을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할 경우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건축법과 전기의 위험도에 따라 전압과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감리대상 차이로 인하여 특정 전기설비는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동일한 감리대상에 대하여 두 개 법률의 배치기준을 적용할 때 법률적용의 혼란 및 형평성의 문제 등을 들어 제2항의 삭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는 건설교통부가 주장한 대로 제2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정부는 동년 11월 28일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제2항을 삭제한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구체적인 과정은 첨부자료 참조)

O기자 : 그러면 국회에서는 어떻게 심사를 하였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O회장 : 2001년 11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그 다음날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전문위원실의 검토를 거쳐 2002년 2월 6일 제2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대체토론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공사감리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할 경우, 전기안전확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관한 세부적인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을 하였으며, 2월 7일 소위원회의 검토결과 『공사감리에 관한 특례』규정의 신설은, 귀중한 인명과 재산보호 등 전기안전 확보를 위하여 전기공사감리제도를 도입한 전력기술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동일 감리대상에 대하여 건축법과 전력기술관리법의 동시 운용에 따른 국민의 혼란 등을 감안, 동 특례규정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2월 8일 제2차 산업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였으며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산업자원위원회 여야 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다음 2월 26일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 체계 · 자구심사를 거쳐 2월 28일 제227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통과되었습니다.

O기자 : 그 동안 우리 전력기술인들의 현안인 『공사감리에 관한 특례』규정의 삭제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회장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O회장 : 한 마디로 우리 전기계와 전력기술인들의 대동단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공사감리에 관한 특례』규정이 삭제되므로 인해서 중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서만 시행하게 되어 전력기술인들에게 자긍심과 사기앙양에 좋은 영향을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감리 특례규정의 신설문제는 비단 전기 감리업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기가 건설의 존속변수로 전락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기가 독립변수로 남느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사감리에 관한 특례』규정이 삭제되지 않았더라면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감리업체는 생존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때 전력기술인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정신이 아찔합니다.

전력시설물의 안전성확보가 전기공사감리 발주와 관련 건축주의 편익성 제고와 규제완화차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공사감리에 관한 특례』규정을 삭제해 주신 국회 산업자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감리에 관한 특례』규정이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법률안 입안에서부터 통과될 때까지 뒤에서 수고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자 :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의 『공사감리에 관한 특례』규정이 삭제된 것과 관련하여 우리 회원 및 전력기술인들이 알고 있지 못한 상세한 내용까지 말씀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협회의 발전과 전력기술인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더욱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사감리에 관한 특례』규정이 삭제되기까지의 과정

- 2000. 4. 14 : 규제개혁위원회 제81차 경제제1분과위원회

건설교통부에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으로 "전기공사 감리에 관한 중복규제 정비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해옴에 따라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음

- 2000. 5. 10 : 규제개혁위원회 제82차 경제제1분과위원회

전기 · 소방 · 정보통신 등 설비분야별 전문성 인정, 다만, 민간 일반건축물에 대한 전기감리는 건축법과 전력기술관리법을 상호 인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함

- 2000. 5. 25 : 규제개혁위원회 제84차 경제제1분과위원회

민간 일반건축물에 대한 전기감리는 건축법과 전력기술관리법중 발주자가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결의

- 2000. 6. 9 : 규제개혁위원회 제54차 본회의

민간 일반 건축물의 전기감리는 건축법과 전력기술관리법중 발주자가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권고

- 2000. 8. 4 : 건축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건축법중개정법률안에 제21조제10항(이 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은 경우에는 건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을 신설하여 입법예고

- 2000. 8. 22 : 건축법중개정법률안 제21조제10항 신설 반대탄원서 제출

건축법중개정법률안 제21조제10항의 신설에 대하여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전력기술인 20,382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 산업자원위원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에 반대탄원서 제출

- 2000. 9. 9 : 산업자원부가 규개위에 재심사 신청

규제개혁위원회 제54차 본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산자부가 재심사 신청

- 2000. 9. 27 : 규제개혁위원회 제99차 경제 제1분과위원회

법제처에서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의 양부처 법제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의결

- 2000. 9. 29 : 규제개혁위원회 제61차 본회의

건축법중개정법률안 제21조제10항의 공사감리 특례규정은 법률 체계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하고 민간 일반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감리특례규정은 전력기술관리법개정시 반영하도록 권고

- 2001. 7. 2 :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는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제12조의2(①건축사사무소가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를 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②감리원 배치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공사감리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입법예고

- 2001. 7. 2~7. 23 :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수렴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 전기감리업체, 전기학회 및 전력기술인 등이 전력시설물의 안전성확보 및 관련업체간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12조의2 공사감리특례규정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산업자원부에 제출

- 2001. 10. 26 : 규제개혁위원회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규제심사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는 제12조의2 제1항에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한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원 배치기준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할 사항이므로 제2항의 삭제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는 감리원 배치기준을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할 경우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건축법과 전기의 위험도에 따라 전압과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감리대상 차이로 인하여 특정 전기설비는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동일한 감리대상에 대하여 두 개 법률의 배치기준을 적용할 때 법률적용의 혼란 및 형평성의 문제 등을 들어 제2항의 삭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는 건설교통부가 주장한 대로 제2항을 삭제하기로 결정

- 2001. 11. 28 : 국회에 법률개정안 제출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제2항을 삭제한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제12조의 2 공사감리에 관한특례 규정)을 국회에 제출

국무총리 표창 수상

경기북지회(지회장 : 최장희)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맑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 포상에서 2002. 3. 21 영예의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데 대하여 축하합니다.